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종목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인상조정함 (안 별표)

- 1)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통합·변경한 후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조정함.
-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각각 인상조정함.
-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450원에서 800원으로 350원을 인상조정함.

Ⅲ.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수수료 징수 근거가 개별법령·조례에 분산 규정되어 있고, 물가안정정책으로 요율변동 요인이 있어도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요율수준의 격차 심화로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일부 수수료의 경우 원가 이하의 수수료 징수로 자치단체 정상적재정수입 재원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에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인상조정 후 세입증대 효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2005년도 3개 종목 수수료 징수액을 보면, 총 16,946,450원으로서 종목별로 보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13,141,000원이고,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250,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3,555,4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종목의 수수료를 종전 보다 300원 ~ 35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게 되면, 연간 약 10,799,950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 향후 수수료 요율조정 필요성 여부

2005. 11. 8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수료 원가분석과 관련하여 통보된 내용을 보면, 2005. 3 ~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실시 결과를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산정내역이 통보된 79개 수수료를 중심으로 현행 조례상 수수료 종목 중 해당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요율조

정을 통해 구 재정의 수입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표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징수 현황

(기간 : 2005.1.1~2005.12.31)

(단위 : 원)

연번	종 목	수수료액	발급건수	징수액	인상조정후 예상징수액
	합 계		34,683	16,946,450	27,746,400
1	지방세납세증명서	500	26,282	13,141,000	21,025,6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00	500	250,000	400,0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50	7,901	3,555,450	6,320,800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 . 5. 24 법률 제7957호]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분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